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대상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기초수급자 또는 거주지가 없거나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자
3.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18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지, 현수막 혹은 지인의 소개 등 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계약 후 계약자 혹은 보호자의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비용(2.1:1, 비급여 항목 포함)

등급	1일 수가	구분		①공단부담금	②본인부담금	③=①+② 소계	④비급여 항목 -식사 1일*3000*3식=9000원 -간식 1일1천원	⑤=②본인부담금+④비급여
1등급	90,450	일반 20%	30일	2,170,800	542,700	2,713,500	300,000	842,700
			31일	2,243,160	560,790	2,803,950	310,000	870,790
		감경 12%	30일	2,387,880	325,620	2,713,500	300,000	625,620
			31일	2,467,476	336,474	2,803,950	310,000	646,474
		감경 8%	30일	2,496,420	217,080	2,713,500	300,000	517,080
			31일	2,579,634	224,316	2,803,950	310,000	534,316
2등급	83,910	일반 20%	30일	2,013,840	503,460	2,517,300	300,000	803,460
			31일	2,080,968	520,242	2,601,210	310,000	830,242
		감경 12%	30일	2,215,224	302,076	2,517,300	300,000	602,076
			31일	2,289,065	312,145	2,601,210	310,000	622,145
		감경 8%	30일	2,315,916	201,384	2,517,300	300,000	501,384
			31일	2,393,113	208,097	2,601,210	310,000	518,097
3~5등급	79,240	일반 20%	30일	1,901,760	475,440	2,377,200	300,000	775,440
			31일	1,965,152	491,288	2,456,440	310,000	801,288
		감경 12%	30일	2,091,936	285,264	2,377,200	300,000	585,264
			31일	2,161,667	294,773	2,456,440	310,000	604,773
		감경 8%	30일	2,187,024	190,176	2,377,200	270,000	460,176
			31일	2,259,925	196,515	2,456,440	280,000	476,515

3. 약제비, 계약의 비용, 병원비 등은 비급여에 포함된다.

* 임직원의 가족 입소 시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15%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 무(서비스제공자의 즉시 연락 의무 때문)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입소자 및 보호자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간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함)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청 시